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0년 12월 3일  
행정·재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5일
- 나. 제출자 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12. 3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)

### 제안이유

2020. 7. 1.자 부서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되어 개편된 조직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(안 제6조)
  - 신청사건립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존속기한 변경  
(2021.6.30. → 2026.6.30.)

나. 조직개편에 따라 부위원장 등 변경(안 제7조제2항, 제3항, 제11조제2항)

- 부위원장을 기금담당국장→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
- 당연직 위원 중 기금담당과장→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
-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→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

다. 「지방회계법」을 준용하여 경리관의 명칭 변경(안 제11조제3항)

- 경리관→재무관으로 명칭변경

라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6조, 제11조제4항, 제12조,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, 제13조  
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- 3) 「지방회계법」 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20. 7.22.~ 8.11.) 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 : 해당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배금택)

가. 개정 취지

-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, 관련 내용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

## 나. 주요 개정내용

-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 변경(안 제6조)
  - 기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던 기금 존속기한을 통합신청사 건립 준공일정<sup>1)</sup>을 고려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음
-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주요 보직자 변경(안 제7조제2항, 제3항, 제11조제2항)
  - 기존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기금담당국장으로 하였으나 신청사건립 추진단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정해짐에 따라 행정관리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함
  - 당연직 위원 중 기금담당과장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
  -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함
- 「지방회계법」을 준용하여 경리관의 명칭 변경(안 제11조제3항)
  - 「지방회계법」 제29조를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함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“순화용어” 등으로 일괄 정비(안 제1조, 제6조, 제11조제4항, 제12조, 제13조)

## 다. 종합 의견

-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2020년 7월 1일자로 신청사건립 추진단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됨에 따라
-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을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 6월30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, 기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명칭을 조직개편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<sup>2)</sup>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

1) 통합신청사 건립 준공일정 : 2026년 12월 예정

2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: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직 개편에 맞춘  
본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- 통합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과 기간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각 1부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

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지방회계법

제29조(지출원인행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(이하 “지출원인행위”라 한다)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,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(이하 “재무관”이라 한다)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,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□ 지방재정법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